

[] 설립인가

[] 변경인가

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14일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)	
신청 기관	기업명			대표자	
	법인등록번호		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	본사		전화/팩스	
		지사		전화/팩스	
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					
이의신청 이유					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(또는 변경인가)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		수수료 없음
신 청 안 내			
1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(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3항). 2.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(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3항·제4항).			
처리절차			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정 →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: 교육부			